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5.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6년 4월 25일
- 나. 발 의 자 : 박유규 의원 외 7명
-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3조)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6조)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독사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토록 함.
 -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추진계획에는 현황조사를 통해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사항,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사항, 고독사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둬.
 -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등의 설치,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연계와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위 법인 「노인복지법」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박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
----------	-----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일

발 의 자 : 박유규의원 외 7 명

1. 제안이유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 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3조)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

-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안 제6조)
- 라.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마.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4. 15 ~ 4. 21) :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영등포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 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등
 3.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